<1> 2013년 이의신청 결정 현황

(단위 : 건)

	구 분		건수	결정 유형별 현황					비 고
				인 용	기 각	각 하	취 하	기타	
이의신청	처리대상건수		4,403	-	-	-	-	-	진행 471건 ('14년 이월)
	처리건수		3,932	448	2,099	537	848	-	전년 이월 601건 포함
	보험료 관련	소 계	2,823	127	1,733	376	587	-	
		피부양자	258	12	165	17	64	-	
		임의계속 가입자	158	14	111	4	29	-	
		기타 자격	250	9	131	77	33		
		부과·조정	1,724	37	1,178	167	342	-	
		징 수	433	55	148	111	119	-	
	보험급여	소 계	947	315	284	100	248		
		고의사고	22	2	18	1	1	-	
		범죄행위	146	20	98	13	15	-	
		기타 부당수급	741	293	168	49	231	-	
		민사사건	38	0	0	37	1	-	
	요양급여비용		162	6	82	61	13		
	2012년		3,034	209	1,914	448	463	-	
	2011년		2,970	203	1,794	446	527	-	
	2010년		2,915	162	1,779	445	529	-	
	2009년		2,574	187	1,664	365	354	4	
심사청구	2013년		96	16	36	20	24	-	진행 13건('14년 이월) 전년 이월 6건 포함
	2012년		53	10	27	10	6	-	

※ '인용'에 일부 인용 포함

<2> 연도별 이의신청 결정 추이와 보험료 관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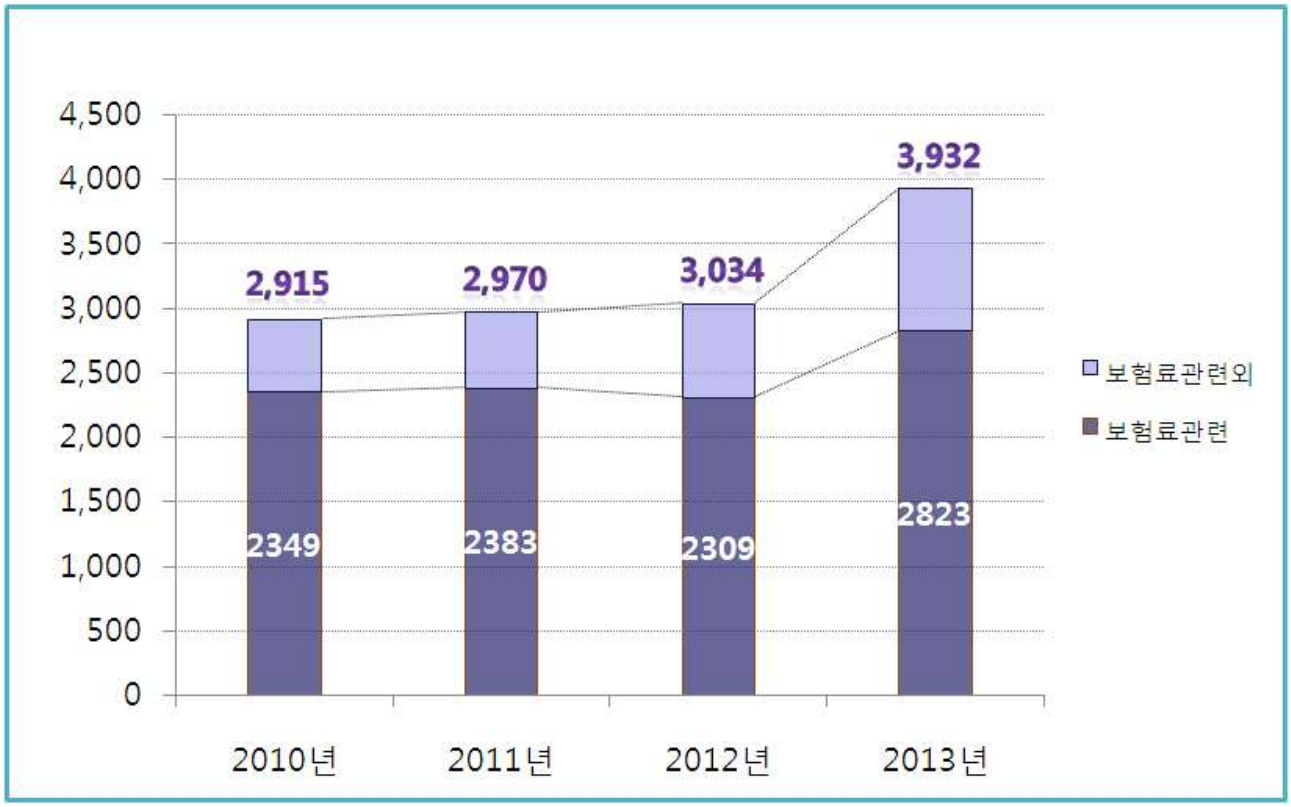

<3> 업무유형별 결정 비중(2013년도)

<4> 이의신청 인용 · 기각 · 제도개선 사례

인 용

◇ 2008년 이후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급여제한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보험자부담금 87,820원을 발생시켰고, 피신청인은 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급여제한대상으로 보아 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고지 함. 그러나 신청인이 2013. 7. 12.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였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동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 신청인은 2014. 4. 21. 강원 평창군에 있는 42번 국도를 자동차로 30km/h로 운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법 제53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급여제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나, 신청인은 최고속도 60km/h인 동 국도에서 충분히 감속 운행을 하였고, 신청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도로가 비로 미끄러워진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사정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급여제한 함은 부당함

기 각

◇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히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피부양자로 적용 중이던 신청인의 부(父)와 모(母)에게 신청인 부(父)의 2012년 연금소득(공무원연금) 4,079만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3. 7. 22.자로 그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취득시킨 피신청인의 처분은 적법함

◇ 지역가입자 고령 세대로 대출상환 부담이 크고 생활이 어려운데도 사업소득 171만원과 재산과표 55,211만원이 확인된다고 하여 2013년 12월 보험료로 189,710원을 부과함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보험료 산정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공부상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고, 부채는 현재 반영되고 있지 않아 형편이 어렵다는 신청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적법하게 부과된 보험료를 감액 조정할 수는 없다는 결정함

제도개선

◇ 임의계속가입대상자가 기존 지역가입자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 정확한 보험료 차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계속가입신청안내문 발송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안내문은 발송하는 것이 권리보호 면에서 타당하므로, 임의계속가입 대상자가 편입된 기존 지역가입자 세대의 증번호를 기준으로 최초 지역보험료가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자는 안내문 발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통보하여 지침 개선함

◇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주가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경우 납부의무가 없는 전입한 세대의 세대주 명의로 독촉고지가 이루어져 보험료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문제가 야기되어 불합리함을 통보함. 2013년 6월부터 체납 후 세대 상실 이력이 있는 전체 대상자에게 독촉고지 하도록 해당 부서 프로그램 개선함